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5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 등 2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125명(3·4급 1명, 5급 2명, 6급 20명, 7급 32명, 8급 28명, 9급 28명, 경정 2명, 경위 2명, 경사 5명, 경장 4명, 순경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 등의 정원 10명(7급 2명, 8급 4명, 9급 2명, 경위 1명, 경사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해양경찰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해양경찰정비창으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노후화된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되는 수산물과학조사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함.

나. 해양경찰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해양경찰정비창에 소속기관으로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설치하는 등 해양경찰정비창을 확대·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1명(3·4급 1명, 5급 2명, 6급 19명, 7급 31명, 8급 27명, 9급 27명, 경정 2명, 경위 2명, 경사 5명, 경장 4명, 순경 1

명)을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해양경찰정비창
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함정 정비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 등의 정원 10
명(7급 2명, 8급 4명, 9급 2명, 경위 1명, 경사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해양경찰정비창으로 이체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5. 4. 7. ~ 4.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27명”을 “631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경찰정비창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42명”을 “373명”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청(기상청 소속)란 다음에 해양경찰정비창(해양경찰청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부산정비창
-----------------------	-----------

별표 3의 해양경찰정비창의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란 제1호 중 “5급”을 각각 “4급”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6급”을 각각 “5급”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총계 “12,666”을 “12,65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460”을 “11,458”로 하며, 총경 이하 “11,451”을 “11,449”로 하고, 일반직 계 “1,206”을 “1,1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94”를 “1,186”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22